

위로금 지급기준표(제11조의2제1항제2호 관련)

장해등급(노동력상실률)	기준금액(원)	
	56세 미만 상이자	56세 이상 상이자
제1급(100) ~ 제3급(100)	10,000,000	8,000,000
제4급(90) ~ 제5급(80)	8,000,000	6,000,000
제6급(70) ~ 제8급(50)	6,000,000	4,000,000
제9급(40) ~ 제10급(30)	4,000,000	2,000,000
제11급(20) ~ 제14급(5)	2,000,000	1,000,000
비고 1. 조정·지급하는 위로금은 해당 기준금액에 사고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. 2. 조정·지급하는 위로금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한다.		